

##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여부 공시 대상]: 해당사항 없음
- 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 대상]: 해당사항 없음
- 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해소 공시]: 해당사항 없음
- (4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해소 공시(세부)]: 해당사항 없음